

2022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아신대학교**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입학홍보팀 입학안내 : 031-770-7701~2 팩 스 : 031-772-5479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admission.acts.ac.kr			



아신대학교
ACTS University
(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2022

· 입학안내 : <http://admission.acts.ac.kr>

01. ACTS 학부제 소개	· 1
02.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주요사항	· 4
03. 지원자격별 안내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 영주교포의 자녀 · 해외근무자의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자영업자의 자녀 · 선교사의 자녀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5
2. 정원제한 없는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8
04. 제출서류 목록	· 10
05.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 12
06. 전형방법 및 일정	· 13
07. 원서접수방법	· 14
08. 지원자 유의사항	· 14
09. 한국어능력 관련 안내	· 16
10.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17
11. 전형료	· 17
12. 입학원서 작성 방법	· 18
13. 학사 안내	· 18
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21

아신대학교 교육체계도

ACTS University Educational System



01. ACTS 학부제 소개

I. ACTS 학부제 소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를 교육하고 그 진리를 견비한 기독교 사역자와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이 시대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학부제를 도입했습니다. 학부제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1학년 과정을 통해 성경적 신앙과 인성, 학문적 기초와 소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한 후 2학년 때 개별 학부제 안의 관심이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 간의 벽을 넘어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인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습니다. 학부제를 통해 심화된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통합적 지식을 아우르는 융합적 인재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부제와 함께 소그룹 공동체 모임과 사제동행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과 진로설계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신학부

신학부는 가장 전통 있는 학문 중 하나인 신학을 공부하는 학부입니다. ACTS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신학부는 그 견고한 전통과 독창적인 학문 성과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복음주의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ACTS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교회연합적 신학을 국제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신학과 성경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함양하고, 신학과 신앙의 균형을 이룬 융합적 인재로 양성되며, 교회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1. 신학 전공

신학 전공은 ACTS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전공 중 하나입니다. ACTS의 시작과 함께 신학 교육은 시작이 되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아시아와 세계의 복음주의를 선도하는 학교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ACTS의 신학 전공은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교회연합적, 선교적, 복음주의적 신학을 가르칩니다. 각 분야의 교수님들은 국내외에서 학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며, 충실한 강의로 명망이 높습니다. ACTS의 신학 전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융합적 차세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복음화' 라는 본교의 3대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에 입각해 학문과 경건을 견비하여 국내외에서 헌신할 선교적이며 복음적인 사역자를 양성합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신학사(B.Th.) 학위 취득, 목회자 및 선교사, 특정 분야의 신학자, 청소년 사역자 및 찬양 사역자, 기독교 관련 기관 사역자, 출판 및 미디어 관련 종사자,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일반 기업 취업

III. 국제개발협력학부

국제개발협력학부는 “국제적, 초교파적, 복음주의적” 등 우리대학교의 세 가지 특성 가운데 국제적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학부입니다. 우리대학교의 설립 이념을 따라서 국제개발협력학부는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인재들을 양성합니다.

국제개발협력학부는 세 개의 전공을 제공하며, 다른 학부의 전공과 연계해서 복수 전공을 해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전공은 타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고 수혜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NGO 현장 실무자를 배출합니다. 글로벌영어 전공은 실용 영어 위주의 교육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를 배양합니다. 중국어 전공은 기초 중국어에서 한·중 통역 단계까지의 체계적 교육과 학습으로 중국어 실력과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 중국 관련 제반 분야에서 활약하는 중국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1. 국제개발협력 전공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우리 정부와 공공, 민간 기관들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증대되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 전공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하고 배출합니다. 우리대학 국제개발협력전공의 특징은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문화적 민감성과 전문 자격을 갖추어 개발도상국의 수혜자들과 소통하고 수혜자 중심의 개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문학사(B.A.) 학위 취득,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NGO 인턴,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NGO 취업, 기업체, 기관 등의 국제개발협력 부서 취업, 국내외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타문화권 선교사

2. 글로벌영어 전공

빠른 속도로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여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CTS의 글로벌 영어전공은 기독교 복음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선교 및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영어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영어 구사 능력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융합형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외에 있는 NGO 단체, 구호단체, 기업들과 같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문학사(B.A.) 학위 취득, 국내외 취업, NGO 단체, 구호단체, 일반기업, 기독교 지도자(목사, 선교사, 교회전문 사역자), 영어 관련 국내외 대학원 진학 (교육대학원, TESOL대학원, 일반대학원 등), 국내외 대학원 진학 (신학대학원 등), 영어 교사, 창업

3. 중국어 전공

중국어 전공은 기독교 신앙 위에 2학년 때부터 기초중국어에서 4학년의 한·중통역 단계까지의 체계적 학습으로 중국어 실력과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 중국 관련 제반 분야에서 활약하는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공입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문학사(B.A.) 학위 취득, 중국 관련 직종 취업, 대안 학교 중국어 교사 외 목회·선교 등 사역 종사, 국내 중국(어) 관련 대학원 진학, 중국 소재 대학원 진학, 우리대학원 또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대학원(M.Div.) 진학

IV.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고백 및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과 미디어를 이해하고, 성경적 지혜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미디어 전문가 및 리더를 길러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배움의 비전 공동체입니다. 본교 교육이념(신본주의와 복음주의) 및 교육목적(아시아와 세계복음화) 위에서 국내외의 가정, 교회, 학교와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기독교적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기독교교육과, 교육과 세상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wig가는 미디어 사역 전문가를 세wig가고 있습니다. 본 학부는 기독교교육(ACSI)과 미디어콘텐츠개발 두 개의 전공을 제공합니다. 기독교교육(ACSI) 전공은 교회교육과 기독교대안학교교육을 위한 교육 전문가를 키우는 과정으로 특별히 기독교학교국제연맹인 ACSI에서 제공하는 기독교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혹은 목회자 및 선교사 등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미디어콘텐츠개발 전공은 기독교 미디어 및 교육 미디어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1. 기독교교육 전공(ACSI)

기독교교육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회의 전통과 문화, 인간의 경험과 사회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돌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신대학교의 기독교교육 전공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을 통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전공으로 교회학교 전문 사역자와 교사는 물론, 국내외 기독교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독교사(ACSI, 기독교학교국제연맹)들을 양성합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문학사(B.A.) 학위 취득,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목회자 및 선교사, 캠프 사역자,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관련 NGO 종사자, 국내외 다양한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가능, 본교 대학원(교육, 상담, 복지, 신학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혜택

2. 미디어콘텐츠개발 전공

신앙과 인성,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하여 세계를 섬기는 탁월한 미디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전공으로 신문, 방송 등의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들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섬길 기독교 미디어 전문가들을 키워냅니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과 비판적 사고능력, 그리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겸비한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들을 세wig기 위해 기독교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매체 개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문학사(B.A.) 학위 취득,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 개발자/교육 미디어 개발 및 운영자, 출판 및 문화 관련 업체 종사자, 일반 기업 취업, 목회자 및 선교사, 국내외 다양한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가능, 본교 대학원(교육, 상담, 복지, 신학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혜택

V. 상담복지학부

급격한 사회변동과 이로 인한 복합적 사회갈등 및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전통적 사고와 해결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ACTS 상담복지학부는 빠르게 재편되는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유와 복지”의 융합적 실천역량을 갖춘 기독교 휴먼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청소년 상담 및 지도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청소년 상담 및 지도전문가와 현장형 사회복지전문가를 꿈꾸는 미래의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1. 사회복지 전공

사회복지전공은 기독교사회복지 가치관을 바탕으로 1급 사회복지사 집중과정, 국제NGO사회복지사과정, 청소년상담복지사과정, 다문화사회복지사과정, 사회복지공무원과정 등 과정별 교과과정, 비교과과정, 해외프로그램, 사제동행프로그램, 현장실습 등을 결합한 맞춤형 과정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독교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세워진 전공입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문학사(B.A.) 학위 취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진출 등 공공사회 복지 영역,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의 분야별 사회복지 종합기관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회 및 기독교기관 산하 복지재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장애인시설(이용 및 거주시설), 노인복지시설(이용 및 거주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민간 사회복지 영역, 학교사회복지사 취득으로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분야,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취득을 통한 의료 분야, 최근 근사회 복지, 교정사회복지, 산업사회복지, 국제NGO 및 국제개발 분야 등으로 국내외 제반 영역으로 확장

2. 청소년상담지도 전공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이러한 일부를 반영할 뿐입니다. 또한 부모가 따라가기 어렵게 빠르게 진로 및 진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시대에 따른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상담지도 전공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인성과 영성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기독교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독교상담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문학사(B.A.) 학위 취득, 청소년상담기관 - 청소년수련기관, 청소년복지기관, 시도청소년지원복지센터, 교육기관 - 초·중·고등학교 상담실, 대안학교 상담실, 학원상담실, 상담심리치료기관 - 시설상담소, 상담기관, 교회 - 교육전도사, 교회 상담실, 아카데미 - 방과후지역센터,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 복수전공 신청시 전공별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해당 전공은 당해연도에 한해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

IV. 전공별 자격증 안내

전공	자격증
국제개발협력	ODA 자격증 (KOICA)
글로벌영어	TESOL Certificate
기독교교육(ACSI)	기독교학교국제연맹(ACSI) 국제기독교사
미디어콘텐츠개발	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② Apple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 과정(Apple Certified Pro Exams) ③ ACA(Adobe Certified Associate -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Pro) ④ 디지털영상편집 자격증(민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⑤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DIAT) ⑥ 문서실무사, 정보기술자격(ITQ) ⑦ 컴퓨터그래픽스응용기술사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사 2급(보건복지부 발급) ② 건강가정사(여성가족부 발급) ③ 정신건강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응시 가능) ④ 학교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응시 가능) ⑤ 의료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응시 가능)
중국어	① HSK, BCT, CPT 등 중국어 자격증 ②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③ 외국어 번역행정사(준비 필요)
청소년상담지도	① 청소년상담사 3급(여성가족부 발급) ② 청소년지도사 2급(여성가족부 발급) ③ 기독교상담사 2급(한국복음주의상담협회 발급)

※ 사회복지사(2급)와 건강가정사는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 취득 가능 (전공 무관)
 ※ 상기 전공 중 일부는 관련 교과목 이수 후 해당 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지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이드 및 교육 진행
 ※ 합격생이 입학 이후 복수전공을 선택하여 해당 전공의 자격증 취득 또는 응시가능

02.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주요사항

1. 모집인원

구분	모집구분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고
입학정원 2%이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제2호)	신 학 부 학	미충원 이월	*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당해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이내)
		국 제 개 발 협 력 학 부 학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기독교교육(ACSI), 미디어콘텐츠개발		
		상 담 복 지 학 부 학		
입학정원 비제한	. 해외에서 전교육과정(12 년)을 이수한 재외국민 과 외국인 .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6호,7호)	신 학 부 학	모집인원 제한없음	
		국 제 개 발 협 력 학 부 학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기독교교육(ACSI), 미디어콘텐츠개발		
		상 담 복 지 학 부 학		

※ 입학정원 2%이내 전형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2. 지원자격

- 모든 지원분야는 공통적으로 **신학부는 기독교 세례교인인 자, 타학부는 기독교 출석교인인자**이어야 합니다.
- 지원자격의 세부사항은 [지원자격별 안내]와 같습니다.

3. 2022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주요 사항

○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사항(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휴교·휴업 기간 인정)

	내 용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해외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기간	학교(학생)의 휴교 기간 및 직장(해외근무자)의 휴업 기간
적용	휴교기간 은 학생 재학 기간 및 체류기간, 해외근무자와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기간에, 휴업기간 은 해외근무자 재직 기간으로,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우리대학 소정양식(출국사유서) 제출)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 등은 대학이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교육부 대입정책과-1083, 2020.02.20.)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1-1.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해당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근무자 (공무원,상사 직원,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당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자영업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에서 자영업(현지법인 근무 포함)을 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선교사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거주한 선교사(선교목적 체류자)의 자녀로 선교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해외 거주·체류 기간을 산정

(1)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 (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라)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가능
- (마)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2)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하였을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으로 역년으로 통산 3년 (1,905일) 이상 근무 해야 함

(3)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가)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나)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다)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4)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가)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1-2.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 (복수국적자 제외)	입학 2급이상, 졸업 4급 이상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1) 재학기간의 기준

- (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 (나)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 학생이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하였을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체류)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2) 보호자 등의 조건

- (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 고교과정 3개학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2-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구 분	지원 자격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고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2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 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1) 전 교육과정

-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여야 함
- (㉡) 해외 1개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2) 보호자 등의 조건

-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결혼이주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2.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복수국적자 제외)	2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1) 재학 인정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 포함)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 (복수국적자 제외)

(2)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3) 외국인 학생·보호자 등의 조건

㉠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자격 기준은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3. 북한이탈주민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1)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을 인정한다.

㉣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3

지원자격 세부 안내

-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2) 재학연한 인정 기준
 - (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 중, 고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나)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에 정상적으로 재학하여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을 인정
- (3)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5)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6) 기타
 - (가)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그외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대학입학전형기본 사항에 따름)
 - (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 인정 방법은 미인정(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다)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04.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확인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영주교포 자녀	① 입학지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 담임(지도)목사 추천서(신학부) 또는 교인증명서(그외학부)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 소정양식) ④ 고등학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⑤ 초·중학교 재학, 성적증명서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⑦ 주민등록말소등본(또는 호(제)적 등본) ⑧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⑨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⑩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⑪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⑫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⑬ 재외국민등록등본 (부모, 학생)	
해외근무의 자녀 • 공무원 • 상사직원 • 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① 입학지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 담임(지도)목사 추천서(신학부) 또는 교인증명서(그외학부)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 소정양식) ④ 고등학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⑤ 초·중학교 재학, 성적증명서 각 1부 ⑥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⑦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⑧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보호자), 학생) ⑨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⑩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⑪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⑫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⑬ 해외지사설치인증허가서 (상사직원의 자녀)	
• 자영업자 • 선교사자의 자녀	⑭ 입학지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⑮ 출석교회 담임(지도)목사 추천서(신학부) 또는 교인증명서(그외학부) ⑯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 소정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⑰ 고등학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⑱ 초.중학교 재학, 성적증명서 각 1부 ⑲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⑳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보호자), 학생) ①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②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③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④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⑤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⑥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자영업자) ⑦ 자영업허가서 사본(자영업자) ⑧ 자영업자의 3년치 해외 세금납부사실증명서(자영업자) ⑨ 현지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법인 근무자) ⑩ 선교단체장 명의의 재직증명서(선교사의 자녀 해당자, 파송일 및 현지 재직기간 명시)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학생본인만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입학지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⑫ 출석교회 담임(지도)목사 추천서(신학부) 또는 교인증명서(그외학부) ⑬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 소정양식) ⑭ 학업계획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⑮ 고등학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⑯ 초.중학교 재학, 성적증명서 각 1부 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⑱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⑲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제적 등본) ⑳ 외국국적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①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귀하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입학지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④ 출석교회 담임(지도)목사 추천서(신학부) 또는 교인증명서(그외학부) ⑤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 소정양식) ⑥ 고등학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⑦ 초.중학교 재학, 성적증명서 각 1부 ⑧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⑨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⑩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귀하허가통지서(해당자) ⑪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⑫ 신분증 사본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지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 담임(지도)목사 추천서(신학부) 또는 교인증명서(그외학부)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 소정양식) ④ 학업계획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⑤ 고등학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⑥ 초.중학교 재학, 성적증명서 각 1부 ⑦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⑨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⑩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⑪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⑫ 재정보증서류(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⑬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지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 담임(지도)목사 추천서(신학부) 또는 교인증명서(그외학부)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 소정양식) ④ 학업계획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⑤ 고등학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⑥ 초.중학교 재학, 성적증명서 각 1부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⑧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⑨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⑩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⑪ 재정보증서류 ⑫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지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 담임(지도)목사 추천서(신학부) 또는 교인증명서(그외학부)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④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중국내 학력취득자 입증 서류 :**

- ① 고등학교 졸업장(졸업증명서) 및 중국교육부 학력인증센터 발행 학력 인증보고서
- ② 학력 관련 인증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공증 후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중국교육부 학력 인증보고서 신청 방법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 아래 지정한 사이트 이외의 학력 인증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1. 학력인증기관 :
 - 교육부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센터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 : www.cdgdc.edu.cn
 - 문의 : 이메일주소 : cqv@cdgdc.edu.cn / 전화번호 : +86-10-8237-9480
 - 2. 한국에서 인증보고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 한국 내의 공식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 : <http://www.cis.or.kr/main.htm/> → 중국학력인증센터
 - 문의 : 이메일주소 : cis88@cis.or.kr / 전화번호 : 02-554-2688

*** 재정능력 입증서류**

- ① 미화 \$20,000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2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①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 입증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③ 가족관계증빙서류(호적등본 등 : 외국인의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증명서. 중국인의 경우 가족사항이 기재된 호구부, 거민신분증)

*** 국가별 가족관계증빙서류 (예)**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엔),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즈벱·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05.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1. 서류 제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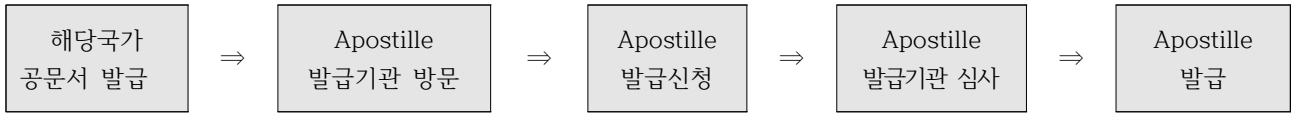
지원자는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해당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비체약국)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단,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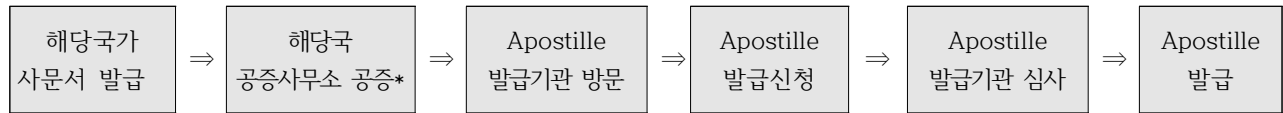
-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07.7.14.부 우리나라에 발효)
- (2)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상호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함
- (3)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과 동일한 효력

3.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1)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2) 사문서* (사립대 등)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06.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구분	전형 방법	비고
전체 전형	면접 100%	

- ※ 성적반영항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모집정원 내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면접고사에 불응시하거나 불합격 처리 시, 최종 불합격 처리합니다.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2021년 11월 29일(월) ~ 2022년 01월 03일(월)	입학홈페이지 서류다운로드 http://admission.acts.ac.kr
원서접수 및 서류접수	2021년 12월 30일(목) ~ 2022년 01월 03일(월) 10:00 ~ 17:00	우리대학교 입학홍보팀
첨부서류 제출기간	○등기우편 : 2021년 12월 30일(목) ~ 2022년 01월 14일(금)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직접제출 : 2022년 01월 03일(월) / 14일(금)(2일간) 10:00-17:00 - 지원 학부 제출서류는 모집요강 참조	우리대학교 입학홍보팀
전형일 (면접고사)	2022년 01월 20일(목) 10:00	우리대학교(경기도)
합격자 발표	2022년 01월 28일(금) 11:00	입학 홈페이지
등록일자	2022년 02월 09일(수) ~ 11일(금) 16:00까지	합격자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및 지정 등록장소

07. 원서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1. 서류접수 : <제출서류 목록>의 해당사항 참고

※ 외국공문서(증명서)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단,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원서접수 : 입학원서, 출석교회 담임(지도)목사추천서(신학부), 교인증명서(타학부), 학력사항기록표, 기타 제출서류

접수처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아신대학교 본관 101호 입학홍보팀 전화 : (031) 770-7701~7702 팩스 : (031) 772-5479
-----	--

3. 우편접수는 제출서류 일체(수험표 및 부분 포함)를 우편발송 후 원서접수 기간 중 입시 사무실에 반드시 전화하여 우편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수험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편발송 후 확인을 하지 않고 수험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우편물 분실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8. 지원자 유의사항

[복수지원 관련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다수의 전형에 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함.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은 지원횟수에 제한없음
- 정시모집 지원 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총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다만 정시모집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필수확인사항]

<p><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모집에서 모집군이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을 금지합니다. 단, 특별법 설립대(KAIST, UNIST, GIST, DGIST, 경찰대학 등), 산업대, 전문대학은 제외합니다. ○ 동일 대학의 모집군이 같은 모집단위(계열/학과(학부)/전공)에 복수지원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p><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모집군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p><대입 수시모집 합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최초, 충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우리 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복수지원이 불가합니다.
2. 우편에 의한 접수를 포함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우리 대학교에 원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지원자는 서류접수 여부를 우리 대학교 입시 사무실(031-770-7701~2)에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지원자는 지원 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4.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해당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단,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사본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접수된 지원서는 지원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대학의 귀책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7. 최종 합격자라도 이미 제출한 서류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 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9.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 위조 및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이미 등록을 하였다더라도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전형일에는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사진이 나온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 시 전형일에 입시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11. 전형일에는 출신학교 교복, 배지 등 출신학교를 알 수 있는 복장을 하면 안되며 휴대폰, 스마트워치, MP3 등 전자 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12. 전형일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가격리, 확진을 받은 자, 전형일 당일 발열 등 유증상을 보이는 자는 우리 대학을 방문하지 말고 입학홍보팀에 즉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13.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4. 제출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외국국적 신입생은 재학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6.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전형요강이 발표된 후에도 지원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학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신봉하거나 선전하는 자는 입학 불허합니다.
 - ① 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회 또는 타종교에 출석하는 자는 우리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② 기성교회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자라도 이단교회 및 타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③ 이단교회 및 타종교 출석을 숨기고 입학 하더라도, 입학 후 이단교회 및 타종교 출석 사실이 밝혀지면 제적처리 됩니다.
18. 우리 대학교 정원 외 특별전형 입학자는 학부(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9. 전형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침이 정부기관으로부터 강화될 경우, 본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에 따라 전형이 진행됩니다.
20.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21. 대학 입학전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수험생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32조 1(이의신청처리)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전형일(면접) 유의사항 ■

1. 모든 지원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지원자가 전형일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격리 중이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자가격리 또는 확진 사실을 숨기고 면접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 받은 지원자가 입학홍보팀으로 사전 접수하고 비대면 면접환경을 갖추었을 경우 비대면 면접전형에 응시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학홍보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031-770-7701, 7702).
 - 해당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학홍보팀에 자가격리 또는 확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09. 한국어능력 관련 안내

1.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외국인,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전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한국어능력
 - 입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자 (단,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 졸업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미취득시 졸업자격 미달 처리함)

10.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1. 등록포기

- (1) 정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 가능하고 최초합격 및 충원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등록포기각서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는 우리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금 환불

- (1) 등록금환불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우리대학교 입시 사무실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등록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근거」에 따라 처리합니다.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학기 개시일 이전에 입학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자를 등록포기자로 처리하고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11. 전형료

1. 전형료

구분	전형료
재외국민과 외국인	80,000원
북한이탈주민	52,000원

※ 우편접수시 우체국에서 소액환으로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에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2022년 01월 14일(금)(우체국 소인까지 유효)까지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서와 해당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2. 전형료 반환 안내

- (1) 법 제34조의4제 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2) 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전형료 반환은 2022년 4월 30일 이전 우리 대학교가 공지한 반환기간에만 반환합니다.
- (3)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① 우리 대학교 방문

- ②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이체 수수료 차감 후 반환)
- (4) 반환절차에 사용되는 비용(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 (5) 전형료 반환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반환대상자의 책임이므로,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입학원서 작성방법

1.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제외)로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2. 입학원서, 입학원서 부분, 수험표 및 접수증의 기재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입학원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3. ‘*’표시가 된 란은 우리 대학교에서 기재하는 란이므로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원구분은 신입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2) 지원자격은 “① 외국영주교포자녀,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③ 선교사 자녀”등 중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3) 성명(한글, 한자, 영어), 국적,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연락처는 입시기간 중 수험생에게 긴급히 연락이 가능한 수험생 본인이나 보호자(부모)의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5)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국내학교과정에 해당하는 초·중·고·대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재학기간은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6) 국내해당 과정과 정규여부(학력인정교)는 출신학교에 확인 후 기입하여야 합니다.
 - (7) 가족사항 란의 보호자는 영주(근무)기간 내에서 영주(근무)국에 실제 체류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영주(근무)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기입합니다. 제3국 수학 시에는 해당 수학 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같은 란에 별도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8) 출입국 사실란은 출입국가, 일자, 기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된 서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요건에 맞는 기간만 기재 합니다.
 - (9)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라 전형료 반환 은행계좌를 기재합니다.
 - (10)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5. 학력사항기록표 서식을 원어 및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학사안내

I. 생활관(기숙사) 안내

1. 입실자격

입사인원	00명(신입생 및 재학생)
입사자격	신입생, 외국인 학생, 지방에 거주하는 원거리 거주 학생을 우선배정 ※ 합격한 신입생이 입학 후 생활관 입사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함
선발방법	생활관 규정에 따름

2. 신청안내

- 생활관(기숙사) 입사신청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관 사무실로 문의[031-770-7789~7790]

II. 장학금 안내

● 국가 장학금

현황기준일 : 2021. 04. 12.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지급요건		비고
			취득학점	백분율점수	
국가장학금 유형 I	소정금액	가계곤란자 (장학재단 산정 소득분위 0분위~8분위 이내)	12학점	80점이상	

● 교내 장학금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지급요건		비고
			취득학점	백분율점수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수시모집)	30만원	각 학부별· 입학성적(총점) 최우수자	-	-	중복수혜가능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정시모집)	4년 수업료 전액	수능 반영 영역의 평균등급 1등급 이내인 자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91점이상	
	2년 수업료 전액	수능 반영 영역의 평균등급 2등급 이내인 자			
	1년 수업료 전액	수능 반영 영역의 평균등급 3등급 이내인 자			
지역 신입생 장학금	20만원	양평지역 거주 또는 양평군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신입생 중복수혜가능
대안학교 출신자 장학금	100만원	국내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다문화 가족 장학금	50만원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선교사 자녀 장학금 [MK 장학금]	수업료 전액 [MK장학금+국가장학금]	선교사 자녀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국가장학금 포함
교역자 자녀 장학금	20만원	교역자 자녀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교역자자녀 가계곤란 장학금	30만원	교역자 자녀 중 소득분위 0분위 ~4분위			
동문자 자녀 장학금	50만원	본교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자녀			
형제/부부/부자 장학금	82만원	본교 대학 또는 대학원에 함께 재학하는 자			
국가보훈(본인및배우자) 장학금	수업료 전액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국가보훈(자녀) 장학금	수업료 전액	국가유공자 자녀	-	70점이상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업료 전액	북한이탈주민 본인	-	70점이상	만34세 이하
성적 수석 장학금	수업료 전액	각 학부별 성적 수석자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9점이상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1	수업료 85%			
	성적2	수업료 55%			
	성적3	수업료 42.5%			
	성적4	100만원 (40명 이상일 때 지급)			
	성적5	80만원 (50명 이상일 때 지급)			
		각 학부·학년별 성적 우수자			

학생활동 장학금	총학생회 회장	수업료 100%	학생활동에 해당하는 자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총학생회 부회장	수업료 85%				
	총학생회 총무	수업료 55%				
	총학생회 임원	소정금액				
	총학생회 차장	30만원				
	학부 회장	60만원				
	학부 부회장	50만원				
	학부 1학년 대표	25만원				
	학부 1학년 부대표	20만원				
	학부 회계	15만원				
	사생 회장	수업료 55%				
	사생회 총무	수업료 30%				
	졸업준비위원장	30만원				
	졸업준비위원 총무	20만원				
	동아리연합회장	60만원				
	동아리연합회 총무	40만원				
	동아리연합회 회계	20만원				
	동아리연합회 서기	20만원				
	방송부장	수업료 40%				
	방송기자 정기자	30만원				
방송국 엔지니어	40만원					
학보사장	60만원					
학보사기자	20만원					
재해 장학금		100만원	해당년도 재해 대상자 (소득분위 0분위~5분위까지)	15학점 (4학년12학점)	80점이상	1학년2학기 부터 수혜가능
한마음 장학금	중증 (1급~3급)	50만원	장애학생(1급 ~ 6급)	12학점	70점이상	
	경증 (4급~6급)	30만원				
한마음 도우미 장학금		40만원	장애학생이 추천한 학습도우미	-	-	
한마음 부모 장학금		50만원	장애등급 1급 ~ 5급 (소득분위 0분위 ~ 3분위)	15학점 (4학년12학점)	80점이상	
교내 가계곤란 장학금		소정금액	가계곤란자	15학점 (4학년12학점)	80점이상	중복수혜가능
교외 가계곤란 장학금 (외부후원)					77점이상	
언어특기자 장학금	A등급	150만원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해당자	15학점 (4학년12학점)	80점이상	
	B등급	100만원				
	C등급	80만원				
	D등급	50만원				
외국인학생 장학금		50만원	순수외국인학생 (TOPIK 기준점수 통과, 건강보험 필수가입)	15학점 (4학년12학점)	79점이상	
지도교수 추천 장학금		소정금액	가계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후 교수 추천하는 학생	-	-	1학년2학기 부터 수혜가능
국제교류학생 장학금		수업료 전액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	12학점	80점이상	

* 대안학교 출신자 장학금, 다문화 자녀 장학금, 선교사 자녀장학금은 해당 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아도 수혜가능.

14.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성명, 모집단위(지방학부),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교고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신급, 출석교회 정보, 전형구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추가전화번호(1개),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합격자의 경우, 학적자료로의 이관에 따라 일부 자료가 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감염예방법(제6조4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의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리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권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권리 거절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성명,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수험번호,대학교코드,합격/예치금구분(온라인문서등록),접수장소,접수일자,지원결과,전형유형,모집단위명,계열코드,출신고교코드,출신고교유형코드,졸업연도,등록일자구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 주의 :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9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제공 불가).

※ 제출서식은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제출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